#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90

발의연월일: 2020. 9. 17.

발 의 자: 강은미・이은주・류호정

배진교 · 장혜영 · 심상정

윤재갑 · 김민석 · 이용빈

조오섭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또한, 예술인에 대해서도특례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 제도는 최근 산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민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적 형태의 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자가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적 형태의 계약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8조).
- 나.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자영업자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관리하고 신고하도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 신설 및 제18조).
- 다.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및 제50조 등).

- 라. 실업 또는 폐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3개월 간 소득 감소율이 10 0분의 30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보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9조의10 신설).
- 마.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및 제77조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 9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3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하여야 할 것임.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의"를 각각 "근로자 등의"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등이"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2. "일용근로자"란 근로자 중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다.
- 3.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자영업자"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5. "피보험자"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6. "노무제공계약"이란 노무제공자가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 또는 용

- 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이란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을 위한 정보처리 하다)를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 또는 노무 제공계약 등이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9.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10.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11. "보수"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가.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 나. 노무제공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보수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본다.

- 다. 자영업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품을 뺀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12.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1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 14. "단기노무제공자"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계약의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업급여, 소득보전 급여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원, 제70 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및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을 "지원"으로 한다.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들을 고용하거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만 고용하고 있거나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근로자
- 2. 노무제공자
- 3. 자영업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 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이 법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③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 또는 자영업자가 근로자의 수나 사업규모 등의 변동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부터 1년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 제9조(적용 제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근로자, 노무제공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 중 근로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이 65세 이후인 사람
  - 2. 자영업자 중 사업의 개시일이 65세 이후인 사람
  -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 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 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 외국인 근로자
  - 6. 노무제공자 중 소득, 노무제공계약의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은 이 법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4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10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사업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에 성립한다.
  - 1. 근로자등을 사용하는 사업은 최초로 근로자등의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된 날.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이 근로자 수 등의 변동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날
  - 2.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적용을 신청한 날
  - 3. 자영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
  -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업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 2.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제9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

- 3.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등을 사용하는 사업이 해당 근로자등을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들 근로자등을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 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
- 4.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에 따른 확인청구를 한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한다.
  - 1. 근로자: 근로계약의 개시일
  - 2. 노무제공자: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
  - 3. 자영업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에 해당하는 날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 또는 제17조에 따라 확인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등이 해당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의 시작일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0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로한다.

- 1. 제9조에 따른 적용 제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에 해당하게 된 날
- 2.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이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 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3. 사업이 폐업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폐업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4. 제10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적용 제외 신청을 한 사업은 적용 제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

제15조제1항 중 "고용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가"를 "사업주, 제2항에 따른 원수급인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발주자. 원수급인 등이"로, "근로자가"를 "근로자등

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을 "규정 및 제15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를 "하수급인, 제15조의2에 따른 발주자, 원수급인 등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도급사업 등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 인 경우
  - ②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사용하고 그 노무제공 횟수 등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노 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발주자·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무제공 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요청 하는 경우
- 2.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을 사용하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8조의 제목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을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 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등이"로, "고용되어 있는"을 "종사하는"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피보험자격"으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피보험기간 등) ①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일용근로자 및 단기노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본다.

- 1. 자영업자: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
- 2. 일용근로자 및 단기노무제공자: 해당 계약기간 중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정한 기간
- ② 수급자격의 인정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 1. 근로자인 피보험자: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
- 2. 근로자가 아닌 피보험자: 피보험기간
- ③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은 이직일 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로 하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직급여"를 "근로자등의 구직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를 "근로 또는 노무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 4.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준기간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 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6.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또는 노무 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 또는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나.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 ②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1. 기준기간 중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폐업사유가 제58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에 질병

- ·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로, 노무제공 또는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기간에 근 로 등을 할 수 없었던 일수(근로 또는 노무제공에 준하는 보수를 지 급한 날은 제외한다)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기준 기간 중에 근로자·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 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한 근로자등이나 폐업한 자영업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1. 피보험자의 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 된 경우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 3. 그 밖에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하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⑥ 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추후 납부, 보험관계 해지의 제한 및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

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를 "제6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직"을 "이직 또는 폐업"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용근로자"를 각각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근로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을 "종사하기 전 또는 폐업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 또는 폐업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직"을 각각 "이직 또는 폐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구직급여"를 "이직 당시 근로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구직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이직 당시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기초일액은 수급 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징수법 제16 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보험 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⑥ 폐업 당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

- 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1.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 2.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피보험기간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당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였던 수급자격자가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소정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되, 그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제5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100분의 6 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이직일"을 "이직일 또는 폐업일"로, "12개월"을 "18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2개월"을 각각 "18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이직하였고, 이직"을 "이직 또는 폐업하였고, 이직

또는 폐업"으로,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소견(근로자등인 경우에는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제58조제2호가목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대한"을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 중대한"으로, "해고된"을 "해고 또는 계약이 해지된"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제공계약"으로, "결근한"을 "결근하거나 노무제공을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기"를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 자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경우"를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해고되지"를 "해고

또는 계약이 해지되지"로, "권고로"를 "권고 또는 자발적으로"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제61조제3항 중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의2(제69조의10부터 제69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의2 소득보전 급여

- 제69조의10(소득보전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급여(이하 "소득보전 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 1. 피보험자 중 소득보전 급여 신청일 이전에 제39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이상일 것
    가. 근로자,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180일
    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12개월
  - 2. 근로,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을 계속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3. 소득보전 급여 신청 이전 3개월간 근로시간의 단축, 노무제공계 약의 종료,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나 매출액이 감소할 것
  - 4. 소득보전 급여 신청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 또는 매출액 감소 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② 소득보전 급여의 지급액,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득보전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의11(소득보전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소득보전 급여 지급 기간 중에 이직 또는 폐업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이직·폐업한 날 또는 취

업한 날부터 소득보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보전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소득보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기간 이후에 새로 소득보전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여건에 따 른 소득보전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의12(준용) 소득보전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구직급여"는 "소득보전 급여"로 본다.

제70조 앞의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및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삭제한다.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2절(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및 제77조)을 삭제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5장의2(제77조의2부터 제7 7조의5까지)를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7조제1항 중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실업급여"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실업급여"로 한다.

제105조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등이"로,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한다.

제10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0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 중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보험료징수법"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제15조제3항·제15조의2에따라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보험료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험사무대행기관에"를 "보험사무대행기관, 제15조제3항·제15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험사무대행기관은"을 "보험사무대행기관, 제15조제3항·제15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사업장 또는"을 "사업장,"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를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 제15조제3항·제15조의2에따라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로 한다.

제110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 및 제69조의3"을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63조제5항, 제69조 및 제69조의9제1항·제2항"을 "제63조제5항 및 제69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63조제5항 및 제69조의9제1항"을 "제6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69조의9제1항"을 "제6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69조의조, 제69조의9제1항·제2항, 제74조 및 제77조"를 "제69조 및 제69조의12"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68조(제69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0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0조의3(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의 보존)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제15조의2제 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2조제1항 중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업급여"로 한다.

제113조의2제4항 중 "제41조"를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6조제1항제3호 및 제4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05조"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종업원"을 "제15조제3항·제15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그 밖의 근로자 등 및 자영업자"로 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제1항제1호 중 "제1 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을"을 "제15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후단(제77조의5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각각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제10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08조제2항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8조제2항"으 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8조제3항(제77 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8조제3항"으로 하 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제10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7 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87조"으로 하다.

5의2. 제110조의2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       |        |       |       | 피보형   | 험기간   |        |      |  |  |  |  |
|-------|--------|-------|-------|-------|-------|--------|------|--|--|--|--|
| 7     | 구분     |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8년 이상  | 10년  |  |  |  |  |
|       |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8년 미만 | 10년 미만 | 이상   |  |  |  |  |
| 이직일   | 50세 미만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00일   | 330일 |  |  |  |  |
| 현재 연령 | 50세 이상 | 180일  | 240일  | 270일  | 300일  | 330일   | 360일 |  |  |  |  |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 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 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1년 7월 1일
  - 2. 1명 이상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022년 7월 1일
- 3.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023년 7월 1일 제2조(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이 법 시행 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

입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무제공계약 또는 자영업 개시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본 다.

- 제3조(구직급여 신청의 적용례) 제39조, 제43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소득보전 급여 신청의 적용례) 제6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소득보전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1호 중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제1조(목적)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 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 -------<u>근로자</u> 등의---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 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 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 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 등의-----써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근로자 중 1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보 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 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 람을 말한다.

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

항, 제8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3.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

자

-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 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라 한다)
-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 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 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 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 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 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을 말한다.
-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4. "자영업자"란 근로자를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5. "피보험자"란 제15조, 제15 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신 고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 득한 사람을 말한다.
  - 6. "노무제공계약"이란 노무제 공자가 형식이나 명칭에 상 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 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 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본법 1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
    - 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이란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을 위 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 자적 장치 또는 체계(이하 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 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 다.

-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 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 또는 노무제공계약 등이 끝 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9.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10.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 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 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 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 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11. "보수"란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가.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 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

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 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나. 노무제공자의 보수: 「소 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 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 해서는 본문에 따른 보수 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조정률을 곱 한 금액을 보수로 본다.

다. 자영업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2.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 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 제4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 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 · 직 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 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② (생략)

제5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 제5조(국고의 부담) ① ------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 한다.

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 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1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 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 14. "단기노무제공자"란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계약의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     |
|------------------|-----|
|                  | - — |
|                  | - — |
|                  |     |
| 실업급여, 2          | 소   |
| <u> 득보전 급여 등</u> |     |

② (현행과 같음)

---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보 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 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5 에 상당하는 금액을-----

② (생략)

제6조(보험료) ① 이 법에 따른 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 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 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 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및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생략)

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 <br> |      |        |   |   |   | _ | _ | _ | - | • |
|------|------|--------|---|---|---|---|---|---|---|---|
| /=   | 1 -1 | ۱ ــــ | 1 | 1 | _ |   |   |   |   |   |

(2) (현행과 같음)

| 4] | 6조(1       | 보험료  | 1   | <u>0</u>  | 법의  | 적용   | 용을        |
|----|------------|------|-----|-----------|-----|------|-----------|
|    | 받는         | 사람.  | 과 스 | 나업        | 의   | 사업=  | 주는        |
|    | 고-         | 용보험  | 및   | 산         | 업재  | 해보신  | <u> </u>  |
|    | <u>험의</u>  | 보험호  | 로징= | 宁 T       | 등에_ | 관한   | 법         |
|    | 률」(        | 이하   | "보  | 험료        | 징수  | ·법"ċ | <u>기라</u> |
|    | <u>한다)</u> | 로 정  | 하는  | . н       | -에  | 따라   | <u>보</u>  |
|    | 험료         | 를 부담 | 감한다 | <u>}.</u> |     |      |           |
|    | 2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u>지원</u> |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 📗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하는 사람과 이들을 고용하거 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u>사업장(이하 "사업"</u>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제9조에 따 른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 만 고용하고 있거나 노무를 제 공받고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 <u>1. 근로자</u>
- 2. 노무제공자
- 3. 자영업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 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사업 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 법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 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③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 또는 자영업자가 근로자 의 수나 사업규모 등의 변동으 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제9조(적용 제외) ① 제8조에도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는 사업 또는 자영업자가 되 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게 <u>되는 경우에는 그</u> 해당하는 날 부터 1년까지 이 법을 적용한 다. 다만, 해당 사업의 사업주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근로자, 노무제공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 중 근 로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이 65세 이후인 사람
- 2. 자영업자 중 사업의 개시일 이 65세 이후인 사람
-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법 | 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 에 가입할 수 있다.

-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 외국인 근로자
- 6. 노무제공자 중 소득, 노무제 공계약의 기간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사람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은 이 법 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4장은 고용노동부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 | 제10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다.

## 1. 삭제

-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 인 사람
-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법 | 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 에 가입할 수 있다.
-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
- 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 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 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 는 사업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에 성립한 다.

- 1. 근로자등을 사용하는 사업은 최초로 근로자등의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된 날.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 는 사업이 근로자 수 등의 변동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 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날
- 2.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적 용을 신청한 날
- 3. 자영업자는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 록을 한 날
-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 | 및 사업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에 소멸한다.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 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 의 다음 날
- 2.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근 로자(제9조에 따른 적용 제 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과 반수의 동의를 받아 적용 제 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
- 3.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이 해당 근로자등을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들 근로자등을 모두 사용하 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 당 사업이 이 법의 적용 제 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한 날의 다음 날
- 4.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 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삭 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 용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 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적용한다.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 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

부장관이 인정하여 그 보험 관계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에 따른 확인청구를 한 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 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을 피보

- 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 험자격의 취득일로 한다.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 험관계가 성립한 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 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 득한다.

-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

- 1. 근로자: 근로계약의 개시일
  - 2. 노무제공자: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
- 3. 자영업자: 「소득세법」 제1 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②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에 해당하는 날이 제15 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 또는 제17조에 따라 확인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 되는 날을 피보험자격의 취 득일로 한다. 다만, 해당 근로 자등이 해당 피보험자격과 관 련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 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의 시작일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로 한다.
-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 1.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 1. 제9조에 따른 적용 제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

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용제외에 해당하게 된 날 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 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다.
-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 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2. | 피 | 보험자가 | 사망 | 또는 | 이직 |
|----|---|------|----|----|----|
|    | 한 | 경우에는 | ユ  | 사망 | 또는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3. 사업이 폐업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폐업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4. 제10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적용 제외 신청을 한 사업은 적용 제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

| 2          |
|------------|
| 제10조제2항    |
| 제1호 또는 제4호 |
|            |
| <u>.</u>   |

| 제15조( | 피보험자     | 격에       | 관한 | 신고       |
|-------|----------|----------|----|----------|
| 등) (  | <u> </u> |          |    | <u>사</u> |
| 용하는   | 는 근로자등   | <u>=</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 ③ <u>사업주가</u> 제1항에 따른 피 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근로자가</u> 신 고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u>규정</u>에 따라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u>하수급인</u>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⑥ (생 략)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⑦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한 신고에 대해서는 제1항 및

| ② (현행과 같음)         |
|--------------------|
| ③ 사업주, 제2항에 따른 원수  |
| 급인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
| 발주자, 원수급인 등이       |
|                    |
|                    |
|                    |
| <u>자등이</u>         |
| 4                  |
| <u>규정 및 제15조</u>   |
| <u>의2</u>          |
|                    |
|                    |
|                    |
|                    |
|                    |
| ⑤                  |
| 하수급인,              |
| 제15조의2에 따른 발주자, 원수 |
| 급인 등은 제1항에 따른      |
|                    |
|                    |
| ⑥ (현행과 같음)         |
| ⑦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    |
| 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   |
|                    |

<u>하지 아니한다.</u> <신 설>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의2(도급사업 등의 피보험
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제15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
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야 한다.

-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 ②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사용 하고 그 노무제공 횟수 등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발주자 · 원수 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 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자료

신고하여야 한다.

바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

폼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노무

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2.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 폼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노 무제공플랫폼을 사용하는 노 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및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는 사람의 피보험자격 취득)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18조(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 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근로자등이-----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사하는----대통령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 | 령으로-----피보 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 험자격-----. 하다.

<신 설>

제39조(피보험기간 등) ① 제50조 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 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 에서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부 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 다. 다만,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및 단기노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피보험기간 으로 본다.

- 1. 자영업자: 그 수급자격과 관 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 에서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
- 2. 일용근로자 및 단기노무제공 자: 해당 계약기간 중 근로일 수 또는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
- ② 수급자격의 인정을 위한 피 보험 단위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 1. 근로자인 피보험자: 피보험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7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 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 다.

-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1.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

- 2. 근로자가 아닌 피보험자: 피 보험기간
- ③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은 이직일 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로 한다.

| 제 | 40조 | (구 | 직급 | 여의 | 수급  | 요건) | 1 |
|---|-----|----|----|----|-----|-----|---|
|   | 근로  | 자등 | 등의 | 구직 | 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 한 상태에 있을 것

3. (생략) <신 설>

4. (생략)

- <u>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삭 제></u> 해당할 것
  -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 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 만일 것
  -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 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 계법 | 제22조제1항에 따 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 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 로내역이 없을 것

- 3. (현행과 같음)
- 4.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준기간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 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6.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 또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 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 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 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 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 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 다음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것

- 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 또는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나.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 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 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종 사하였을 것
- ② <u>자영업자에 대한 구직급여</u> 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1. 기준기간 중 자영업자인 피 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

-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 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24개월
  -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
     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
     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 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 였을 것

-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이상일 것
  -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못한 상태에 있을 것
  - 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br/>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3. 폐업사유가 제58조의2에 따<br/>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해당하지 아니할 것
    -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적으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 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

<신 설>

여 30일 이상 근로, 노무제공 또는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 우에는 기준기간에 근로 등을 할 수 없었던 일수(근로 또는 노무제공에 준하는 보수를 지 급한 날은 제외한다)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 으로 한다)을 기준기간으로 한 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해 당 기준기간 중에 근로자·노 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 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한 근로 자등이나 폐업한 자영업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피보험자의 사업이 위치한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 〈삭 제〉 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 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 난사태 또는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경 보가 발령된 경우
- 3. 그 밖에 피보험자의 생활안 정을 위하여 긴급하게 구직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⑥ 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추후 납부, 보험관계 해지의 제한 및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 구직 지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 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에는 마지막에 <u>이직</u>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u>일용근로자</u>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u>일용근로</u>

|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  |
|-------------------|
|                   |
|                   |
| <u>제6호까지의 규</u>   |
| 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
| 제4호까지의 규정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③                 |
|                   |
| 이직 또는             |
| 폐업                |
|                   |
| <u>일용</u> 근       |
| 로자 또는 단기노무제공자     |
|                   |
|                   |

<u>자</u>가 아닌 <u>근로자로서</u> 마지막 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었을 것
- 2. 마지막 <u>이직</u> 이전의 <u>이직</u>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④・⑤ (생략)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① <u>구직급여</u>의 산정 기 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 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 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 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 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 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

| <u>일용근로자 또</u>          |
|-------------------------|
| <u>는 단기노무제공자사람</u>      |
| <u>으로서</u>              |
|                         |
| 1                       |
| 종사하기 전 또는               |
| 폐업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
| 피보험자로서 이직 또는 폐          |
| 업한                      |
| 2 <u>이직 또는 폐업</u>       |
| <u>이직 또는 폐업</u>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
| 일액) ① <u>이직 당시 근로자인</u> |
|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구직급여         |
|                         |
|                         |
|                         |
|                         |
|                         |
|                         |
|                         |
|                         |
|                         |
|                         |

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u><신</u>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직 당시 노무제공자인 피 보험자였던 사람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 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 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 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보험료징 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 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 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 다.

⑥ 폐업 당시 자영업자인 피보 험자였던 사람에 대한 기초일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급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 ------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 동안 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1.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 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 의 피보험기간
- 2.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 우: 피보험기간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당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였던 수급자격자가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소정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제6 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으 로 하되, 그 기초일액이 최저기 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 으로 한다.

-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
   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
   분의 60을 곱한 금액
-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
   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 ② (생략)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저 취업 등의 신고) ①·② (생략)

<신 설>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제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 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

| 1                  |
|--------------------|
| <u>제5항부터 제7항까지</u> |
|                    |
| <u>100분의 70</u>    |
|                    |
| 2                  |
| <u>10</u>          |
| 0분의 90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세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
| 취업 등의 신고) ①・② (현행  |
| 과 같음)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    |
| 제공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
|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대상    |
| 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
|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   |
| 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   |
|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 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   |
| 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                    |
|                    |
|                    |

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u>이</u> <u>직일</u>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u>12개월</u> 내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임신·출산·육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1. (생략)
-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u>이</u> 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 이직              |
|-----------------|
| 일 또는 폐업일        |
| <u>1</u> 8개월    |
|                 |
|                 |
|                 |
| ② <u>18개월</u>   |
|                 |
|                 |
|                 |
|                 |
| <u>1</u> 8개월    |
|                 |
|                 |
|                 |
|                 |
|                 |
| ③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2               |
| <u>이</u> 직      |
| 또는 폐업하였고, 이직 또는 |
| 폐업              |

요양기간과 부상・질병 상태 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 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 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제49조(대기기간) (생 략)

<신 설>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 기간) ① • ② (생 략)

③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 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 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

(근로자등인 경우에는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 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대기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 공자가 제58조제2호가목 단서 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 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기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 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 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 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 ●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 2. (생략)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u>아니하였던</u>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 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 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 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 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의 계 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 다.

-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취득이 확인된 날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 전 격의 제한) <u>제40조</u>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u>중대한</u> 귀책사유(歸責事由)로 <u>해고된</u>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나. (생 략)
다. 정당한 사유 없이 <u>근로계</u>
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
반하여 장기간 무단 <u>결근</u>
한 경우

|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    |
|-----------------------|
| 격의 제한) <u>제40조제1항</u> |
|                       |
|                       |
|                       |
|                       |
|                       |
| 1.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     |
| 시의 사업에서 중대한           |
| 해고 또는                 |
| <u>계약이 해지된</u>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
| 다 <u>근로계</u>          |
| 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제        |
| <u>공계약</u>            |
| 결근하거나 노무              |

- 2. <u>자기</u>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 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단서 신설>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 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생략) <신 설>

| 제공을 하지 아니한         |
|--------------------|
| 2.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  |
| 시의 사업에서 자기         |
|                    |
|                    |
|                    |
| 가                  |
| <u>후</u> 3개월       |
|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    |
| 만, 노무제공자는 대통령령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
| 득이 감소하여 이직하였다      |
| 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     |
|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 나                  |
| 해고 또는              |
| 계약이 해지되지           |
| <u>권</u> 고 또는 자발적  |
| <u>으로</u>          |
| 다. (현행과 같음)        |
| 제58조의2(폐업사유에 따른 수급 |
| 자격의 제한) 제40조제2항에도  |
|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
|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    |
| 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 ② (생 략)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 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 에 따라 폐업한 경우
-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 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폐업한 경우
-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 하는 등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 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후 3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 한 경우

지급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 음)

| ③ |
|---|
|   |
|   |
|   |
|   |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⑤ (생략)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삭 제> 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 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 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 한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삭 제>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 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 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 년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 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 - <u>제50조제4항</u> |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적으로 할 것

제69조의4(기초일액) ① 자영업자 | <삭 제> 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 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험료징수법 제4 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 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 로 한다.

- 1.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 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 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 험기간
- 2.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 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수급 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 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 자가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보 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제69조의6에서 정한 소정급여

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되, 그 기초일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

   저기초일액
- 2. 기초일액이 제45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자영업
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
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
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
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자영업
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
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

<u><</u>삭 제>

<삭 제>

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 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 까지로 한다.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 <삭 제> 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 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 에 따라 폐업한 경우
-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 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폐업한 경우
-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 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 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 한 경우

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삭 제> 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 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 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삭 제〉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 는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 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 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 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 제1항ㆍ제43조제3항 중 "이직" 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 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u>제3호까지 · 제5호</u>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 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 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 로 본다.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 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7

조제1항·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 람"으로 본다.

<u><신 설></u> <u><신 설></u>

제4장의2 소득보전 급여 제69조의10(소득보전 급여) ① 고 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급여(이하 "소득보전 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 1. 피보험자 중 소득보전 급여 신청일 이전에 제39조제2항 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이 상일 것
  - <u>가. 근로자, 노무제공자인 피</u> 보험자: 180일
  - <u>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12</u> <u>개월</u>
- 2. 근로,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을 계속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3. 소득보전 급여 신청 이전 3 개월간 근로시간의 단축, 노 무제공계약의 종료,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나 매출액이 감소할 것

- 4. 소득보전 급여 신청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 또는 매출액 감소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 ② 소득보전 급여의 지급액,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득보전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의11(소득보전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소득보전 급여 지급 기간 중에이지 또는 폐업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이지 매업한 날 또는 취업한 날부터 소득보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보전 급여를 받 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
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
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
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
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
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려 한 날부터의 소득보전 급여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기간 이후에 새로 소득보전 급여 요건을 갖 춘 경우 그 새로운 여건에 따 른 소득보전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의12(준용) 소득보전 급여 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소 득보전 급여"로 본다.

> <u><삭 제></u> <삭 제>

<u><삭 제></u>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 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 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 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 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 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 | <삭 제> 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 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 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 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 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 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 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 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 러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

<삭 제>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 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 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 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 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 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 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 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삭 제>

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 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 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 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 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를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 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 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 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준용) ① 육아휴직 급여에 │ <삭 제>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 직 급여"로 본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부 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 급여"로 보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 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으로 본다.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 <삭 제>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 ·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삭 제>

지급한다.

-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 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 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 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 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 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 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

<삭 제>

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 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 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 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 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삭 제>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 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 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 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 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 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 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렁으로 정한다.

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삭 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 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제71조부터 제73조까 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각각 본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 대한 고용보험 특례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삭 제>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 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 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 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 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 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 구하고 이 장(章)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삭 제>

법률 제17429호

-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6 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③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투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

수인 경우

-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 이 다수인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사업주와 예술인 등은 발주자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 하여야 한다.
- ⑤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예술 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 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⑥ 예술인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삭 제>

법률 제17429호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 한다.

-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9개월 이상일 것
-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 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 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제5장의2에서 같 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
     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
     내역이 없을 것
  -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
    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
    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 런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 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 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 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 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 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 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 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보험료정수법 제3 조에 따른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 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 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⑦ 예술인의 소정급여일수 산 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 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예술인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 로 한다.
-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 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 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 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 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삭 제>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 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 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 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5(준용) ① 예술인의 피 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 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

법률 제17429호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삭 제>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 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1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본다.
- ③ 예술인의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하는

-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 야 한다.
  - 1. ~ 2의2. (생략)
  -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 4. ~ 7. (생략)
  - ② ③ (생 략)
-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 [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 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 ②・③ (생 략)
-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 제87 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 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 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대

|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  |  |
|---|--|--|
| <br><br>1. ~ 2의2. (현행과 같음)<br><u>&lt;삭 제&gt;</u>    |  |  |
| 4. ~ 7. (현행과 같음)<br>②·③ (현행과 같음)<br>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 |  |  |
| <u>실업급여</u>   |  |  |
|   |  |  |
| <br>,   |  |  |
| ②·③ (현행과 같음)<br>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                    |  |  |
|   |  |  |

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 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 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 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u>근로자가</u>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u>근로자에게</u> 해고나 그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 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제32조·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 1. 2. (생략)
  -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제107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 제107조(소멸시효) ①

| 기시크시                     |
|--------------------------|
| <u>실업급여</u>              |
|                          |
|                          |
| <u>.</u>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
| 근로자등이                    |
| <u> </u>                 |
|                          |
| <u>근로자등에게</u>            |
|                          |
|                          |
|                          |
| 제106조(준용)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
| <u>&lt;삭 제&gt;</u>       |
|                          |
| 계107조( <b>)</b> 다 시 중) ①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1. ~ 3. (생 략)
-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
   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을 반환받을 권리
- ② (생략)

제108조(보고 등)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 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 정수급(不正受給)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 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직한 사람은 종전의 사업 주 또는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

| <br>1. ~ 3. (현행과 같음)<br><u>&lt;삭 제&gt;</u>                            |
|---|
| ② (현행과 같음)<br>제108조(보고 등) ①   |
|   |
| <u>사</u><br>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업<br>주, 제15조제3항·제15조의2에<br>따라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
| <u>하는 자, 보험료징수법</u>   |
|   |
|   |
|   |
|   |
|   |
|   |
|   |
| ②   |
|   |

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받은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③ (생략)

제109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 기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 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있다.

|            | 보험사무대행기                   |  |  |  |
|------------|---------------------------|--|--|--|
|            | <u>관, 제15조제3항·제15조의2에</u> |  |  |  |
|            | 따라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  |  |  |
|            | 하는 자에게                    |  |  |  |
|            |                           |  |  |  |
|            |                           |  |  |  |
|            | <u>보험사</u>                |  |  |  |
|            | 무대행기관, 제15조제3항ㆍ제15        |  |  |  |
|            | 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신          |  |  |  |
|            | 고하여야 하는 자는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                           |  |  |  |
| 제          | 109조(조사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ambda</u>            |  |  |  |
|            | <u>업장,</u>                |  |  |  |
|            |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  |  |  |
|            | <u>자, 제15조제3항·제15조의2에</u> |  |  |  |
|            | 따라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  |  |  |
|            | <u>하는 자의</u>              |  |  |  |
|            |                           |  |  |  |

## ② ~ ④ (생 략)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따라야 한다.

- 1. ~ 4. (생 략)
- 5. <u>제40조 및 제69조의3</u>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확인
- 6. 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 및 제69조의9제1항·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지급되지 아니 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 7. 제61조(<u>제63조제5항 및 제69</u> <u>조의9제1항</u>에 따라 준용되는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5. <u>제40조</u>     |
|                    |
| 6제63조제5항 및 제69     |
| 圣                  |
|                    |
|                    |
| 7 <u>제63조제5항</u>   |
|                    |

|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               |                    |
|-------------------------------|--------------------|
| 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등                |                    |
| 의 지급 제한                       |                    |
| 8. 제62조(제63조제5항, <u>제69조,</u> | 8 <u>제69조</u>      |
| 제69조의9제1항·제2항, 제74            | <u>및 제69조의12</u>   |
| 조 및 제77조에 따라 준용되              |                    |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                    |
| 구직급여 등 지급금의 반환                |                    |
| 및 추가징수                        |                    |
| 9. 제68조(제69조의9제1항에 따          | 9. <u>제68조</u>     |
|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                    |
| <u>다)</u> 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의       |                    |
| 지급 제한                         |                    |
| 10. 제73조(제74조제2항 및 제7         | <u>&lt;삭 제&gt;</u> |
| 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에 따른 육아휴직                |                    |
| 급여 등의 지급 제한                   |                    |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              | ②                  |
| 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를               |                    |
|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               |                    |
| 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              |                    |
| 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              |                    |
| 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              |                    |
| 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               |                    |
| 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u>이 경우 요청을 받은</u> |

1.・2. (생 략) ③ (생 략) <u><신 설></u>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보험사 업의 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 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자는 그 자료가 자기테이 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 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u>실업급여·육아</u> 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자활급여는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및 제45조에 따른 임금일액의

| 제110조의3(피보험자격에 관한  |  |  |
|--------------------|--|--|
| 정보의 보존) 노무제공플랫폼    |  |  |
| 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와    |  |  |
| 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  |  |
| 도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피  |  |  |
| 보험자격의 신고에 필요한 정    |  |  |
| 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  |
| 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  |
|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  |  |
|                    |  |  |
|                    |  |  |
| 실업급여               |  |  |
| _ <del></del>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
|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 |  |  |
|                    |  |  |
| 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  |
| ① ~ ③ (현행과 같음)     |  |  |
| 4                  |  |  |
| 2                  |  |  |
| - <u>제39조제2항</u>   |  |  |
|                    |  |  |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본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 1. 2. (생략)
-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 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및 출산전후급여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 _  |  |  |  |
|--|--|--|--|
| ,      |  |  |  |
| 법률 제17429호                                   |  |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  |
| 제116조(벌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u>                                     |  |  |  |
| 1.•2. (현행과 같음)                               |  |  |  |
| <삭 제>  |  |  |  |
| <u>\                                    </u> |  |  |  |
|  |  |  |  |
|  |  |  |  |
| <삭 제>  |  |  |  |
| <u> </u>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1. <u>제105조</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략)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42조제3항 <u>후단(제77조의5</u>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 3. 제43조제4항 <u>후단(제77조의5</u><u>제2항에서</u>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

| 2. (현행과 같음)       |  |  |
|-------------------|--|--|
| 법률 제17429호        |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
| 제118조(과태료) ①      |  |  |
|                   |  |  |
|                   |  |  |
| 제15조제             |  |  |
| 3항·제15조의2에 따라 피보험 |  |  |
| 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그 |  |  |
| 밖의 근로자등 및 자영업자    |  |  |
| <u> </u>          |  |  |
|                   |  |  |
|                   |  |  |
| 1. <u>제15조를</u>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3후단               |  |  |
| J. <u>干让</u>      |  |  |
|                   |  |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 자 4.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 4. 제108조제1항-----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 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 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5. <u>제108</u>조제2항-----5.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 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 지 아니하 자 <신 설> 5의2. 제110조의2에 따른 요청 에 불응하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 6. 제109조제1항-----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 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라 요구된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 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 2.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③ 제87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 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 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

| ②                  |
|--------------------|
|                    |
|                    |
|                    |
|                    |
|                    |
| 1. <u>제108조제3항</u> |
|                    |
|                    |
|                    |
|                    |
|                    |
|                    |
| 2. <u>제109조제1항</u> |
|                    |
|                    |
|                    |
|                    |
| ③ <u>제87조</u>      |
|                    |
|                    |
|                    |

| 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            |
|-------------------|------------|
|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            |
|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            |
|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